

- 2022년도 제1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-

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2년도 제1회 원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부서	근무기간	직무내용
코로나19 방역인력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 35시간 근무)	10명	보건소	1년 (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)	- 코로나19 관련 업무 · 역학조사, 재택치료, 자가격리, 상황관리, 선별진료소 기타 방역 업무 - 필수 자격(면허)증 관련 보건소 업무(방역대책추진단 투입인력의 대체인력으로 업무 수행) - 코로나19 상황 조기 종료 시 필요에 따라 결원부서 행정 업무

※ 근무실적 및 채용필요성 따라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(4년 연장 가능)

※ (우대사항) 일반행정 또는 보건행정 업무 경력자 우대

주말 근무 및 야간 근무 가능한 자

코로나 확산으로 유사 시 초과근무 가능한 자(초과 근무 수당 지급)

2 근거 법령

가. 지방공무원법

나. 지방공무원 임용령

다.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
라. 원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가. 일반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정지 또는 제한이 되지 아니한 사람
- 국적: 대한민국
-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4. 12. 31.이전 출생자)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자격 및 경력 요건 (*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임용분야	자격·경력 요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자격(면허)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로, 자격(면허)증 취득 후 1년 이상 아래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격(면허)증: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치위생사 관련분야 실무경력: 공공·민간 영역에서의 일반행정 업무 또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일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. 우대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행정 또는 보건행정 업무 경력자 우대 주말 및 야간 근무가 가능한 자 코로나 확산으로 초과근무 가능한 자(초과 근무 수당 지급)

* 경력요건 증빙자료 관련 참조사항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- 필수 기재사항 ※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불인정 / 제출서식 별지 제5호 참조
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
 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
*근무기간

- 상근(주40시간 이상) : 경력 전부 인정
- 비상근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
-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

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- 경력인정 기한: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
4 보수수준

임용직급	연봉액
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36,344,800원

- ※ 연봉액은 기본연봉·직급보조비·정액급식비·특수직무수당·코로나19 업무 관련 수당·초과 근무수당 정액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상기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함.
- ※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가지급함
- ※ 대직불가 직무 등 업무 특성 상 장기 휴가 및 휴직 등은 불가함

5

시 험 방 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등 응시요건 적합여부 심사

※ 서류전형 기준: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 경력, 자격증 등

나. 2차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면접평정 요소*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

※ 면접평정 요소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|
| 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㉣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|
| 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6

시 험 일 정

가.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

- 시험공고: 2021. 12. 20.(월)~12. 30.(목)
- 원서접수: 2021. 12. 28.(화)~12. 30.(목) 18:00까지
(공휴일 제외, 마감 후 추가·수정접수 불가)
- 접수방법: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

【방문 접수】

- 접 수 처: 원주시청 7층 총무과 인사팀 (대리접수 가능)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
-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(6번창구)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접수(5,000원)
- ※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

【등기우편 접수】

- 주 소 지: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, 총무과 인사팀 (무실동, 원주시청) (우 26384) 채용담당자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(택배·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)
-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다음 날까지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
(임기제 채용담당자 : ☎ 033-737-2224)
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
- ※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
- ※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2. 1. 3.[월] 예정

다. 면접시험: 2022. 1. 6.[목] 예정
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2. 1. 7.[금] 예정

마. 최종일용: 2022. 1. 13.[목]

- ※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※ 합격자 발표 공고문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장소·일정 등 공지

7

제 출 서 류

【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】

가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
- 응시 수수료: 5,000원 (※원주시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,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)
- 수 입 증 지: 원주시청 1층 민원과(6번 창구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(이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)

나. 이력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※미 제출시, 기재금지

다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
라. 직무수행 계획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
마.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별지 제5호 서식 참조]

-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- 필수 기재사항 ※필수사항 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불인정/ 제출서식 별지 제5호 참조
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급), 담당업무 기재
 - 증명서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
*근무기간

- 상근(주40시간 이상) : 경력 전부 인정
- 비상근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
-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

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
- 경력인정 기한
 -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
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-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.
-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가능함.

사. 자격증 사본 1부

아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취득증명서) 1부

-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자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차. 주민등록초본 각1부 [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]

카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제7호 서식]

타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 제8호 서식]

파.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[선택사항]

-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
-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

8

유의사항

- 가.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, 「공무원 연금법」, 「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이 적용됩니다.
- 나.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공고를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라.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작성·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 (재공고인 경우 응시자 발생 시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)
- 바.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임기제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·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카.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.
- 타.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파.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 담당자(☎033-737-2224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